2024년부터

확 달라진 「농업경영체 등록제도」 안내

-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개정·시행(2024.2.17.) -

'24년 부터 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 등록 ·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하여 비농업인의 등록 차단과 농업경영정보의 정확도가 높아집니다.

◈ **'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' 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.**(법 제4조제3항)

○ **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 설정 근거가 마련**되어 **법적 근거 미비점이 해소**되었습니다.

◈ **'증빙 자료'에 의한 농업경영정보 확인 및 현장조사가 강화됩니다.**(법 제5조)

○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인에게 **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, 농업인은 30일 이내에 증빙 자료를 제출**하여야 합니다.

○ 농업인은 농지·축사 등의 소재지 **이장·통장 등에게 실경작을 증명**하는 **'영농사실 확인서' 등의 증빙자료에 대한 확인 또는 증명 요구**가 가능합니다.

○ **제출한 증빙 자료의 진위여부를 확인**하여 **거짓** 또는 **등록정보가 불일치** 한 경우, **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직권으로 정정** 또는 **말소**합니다.

◈ **농업경영정보의 실태조사 등 관리체계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.**(법 제5조, 제6조)

○ 농업경영정보 **정확도 검증**을 위한 **농업경영정보 실태조사**가 실시됩니다.(법 제5조의2)

○ 농업경영정보에 대한 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**직권 정정·말소**를 위한 **세부요건이 아래와 같이 구체화** 되었습니다.(법 제6조의2제1항)

<농업경영정보의 직권 정정 또는 말소 기준(법 제6조의2제1항)>

구 분	정정 또는 말소 사유
현행 규정	① **거짓, 기타 부정한 방법**으로 경영정보를 **등록**(변경)한 경우
	② 농업경영정보의 **유효기간(3년)이 경과**한 경우
	③ 주소, 소재지, 품목·면적 등 **등록정보가 불일치**하는 경우
신설 규정	① 농업경영정보의 **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**
	② **경영주가 사망**하거나 주민등록법에 따른 **거주 불명**인 경우
	③ **농업법인이 해산명령**을 받은 경우
	④ 「농지법」에 따른 **농지처분명령**을 받은 경우
	⑤ 「농지법」에 따른 농지의 **임대차 또는 사용대차를 위반**하여 벌금을 선고받은 자의 해당 농지 정보를 등록한 경우
	⑥ 관련 **증빙자료 제출(30일 내)을 거부**하는 경우

◈ **거짓·부정등록자 및 증명서류 거짓 확인·증명자의 처벌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.**(법 제31조)

위반행위	현행	개정	관련규정
거짓·부정등록자	과태료 (100만원 이하)	**벌금** (500만원 이하)	법 제31조의2제2항
거짓·부정등록 확인·증명자	-	**과태료** (100만원 이하)	법 제33조제1항제2호

◈ **거짓·부정등록으로 경영체 등록이 말소된 경우, 1년 간 재등록이 제한됩니다.**(법 제6조의2제4항)

▣ **농업경영체 등록 콜센터: ☎1644-8778 /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군산사무소 ☎063)452-6399**